식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,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므로

○ 토지 소유자와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사전 협의가 완료되어 동 토지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(철도) 변경결정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됨

8. 심사결과 : 원안동의

○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

.....

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	16

제출년월일 : 2002. 7. 19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건명 : 강남구 역삼동 722번지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

2. 입안 내용

구분	위 치	면적(㎡)	용도지역		비고
			변경 전	변경 후	
변경	강남구 역삼동 722번지일대	4,946.2	일반주거지역	제3종일반 주거지역	

3. 입안 사유

○ 시장기능이 상실[‘99.9.20 시장(가자종합상가) 폐업 신고]된 시장의 도시계획시설(시장) 폐지와 함께 일반주거지역 종의 세분화를 병행 처리하고자 함

4. 기타

○ 주민 의견 청취 현황

- 공람공고 기간 : 2002. 2.18 ~ 3. 4
- 청취방법 : 2개 일간지(전국매일, 내외경제)
- 접수 의견 : 없음

○ 도시계획상임기획단 : 이견없음

○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,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, 시장

○ 편입 토지, 건물 현황

- 토 지 : 사유지 : 1필지(4.845.02㎡), 구유지 : 2필지(102.2㎡)
- 건 물 : 30,232.87㎡(지상 17층/지하 3층)

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	76

제출년월일 : 2002. 11. 4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건명 :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

2. 입안 내용

○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, 시장) 변경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규모(㎡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유통업무설비	-	송파구 가락동 600일대	538,351	감)538,351	0	
신설	시장	농수산물도매시장	송파구 가락동 600일대	0	증)531,830	531,830	

○ 건축물의 규모

건폐율	용적률	건축물의 높이	비고
55% 이하	70% 이하	해발 37m (5층) 이하	

3. 입안 사유

○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·운영되는 시장으로써 운영실태를 현행규정으로 비추어볼 때 「유통업무설비」보다는 「시장」이 적합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(유통업무설비→시장)하고자 함

4. 기 타

○ 주민의견 청취 현황

- 공람공고 기간 : 2002. 9. 20. ~ 10. 4.
- 청취방법 : 2개 일간지(세계일보, 서울경제)
- 접수의견 : 없음

○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

- 「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」에 의해서 개설된 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(시장)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「시장종합관리방안」에서의 재정비 기준에 부합되어 변경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도시계획사항

- 유통상업지역(일부), 자연녹지지역(일부), 생산녹지지역(일부), 미관지구(일부), 유통업무설비

○ 시장편입 토지 및 건물 현황

- 토 지 (사유지 : 농수산유통공사) : 6필지 (531,830㎡)
- 건 물 : 208개동 연면적 309,799㎡

도시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	132

제출년월일 : 2002. 1. 29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 건 명 : 도시계획시설(학교)변경결정

2. 안건내용

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변경결정 조서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학 교	광진구 군자동 98번지 일대	109,728.2	증) 8,692	118,420.2	'76. 6.23	세 종 대학교

3. 변경사유
   ○ 세종대학교는 대학설립·운영규정 제5조 규정에 의한 교지확보율이 기준면적의 50%이하 수준으로서 현저히 부족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하므로, 군자동 111-1외 1필지(구: 한국화장품 사옥부지)를 학교로 편입하여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함.
4. 참고사항
   가. 주민의견청취 현황
      ○ 공람공고 : 2002. 6.28(광진구공고 제2002-209호, 전국매일/대한매일)
      ○ 공람기간 : 2002. 6.29 ~ 7.13 (14일간)
      ○ 주민의견청취 : 의견제출 없음
   나.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결과 : 특이사항 없음
   다. 도시계획상임기획단 : 이견없음
   라. 광진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: 2002. 9. 11 (원안가결)
   마. 기 타
      ○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, 학교
      ○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현황
         - 토 지 : 군자동 111-1 외 2필지 8,692㎡ (세종대학교 소유, 2001.8.23.소유권 이전)
         - 건 물 : 3동(부속동 10동)

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	133

제출년월일 : 2002. 1. 29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 건 명 : 용산구 보광동 80-21호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
2. 입안 내용

구분	위 치	면적 (㎡)	용도지역		비고
			변경 전	변경 후	
변경	용산구 보광동 80-21호	1,850	일반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

3. 입안 사유
   ○ 차고지 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폐지와 함께 일반주거지역 종의 세분화를 병행 처리하고자 함
4. 기타
   ○ 주민의견 청취 현황
      - 공람공고 기간 : 2002. 10. 19 ~ 11. 2

- 청취방법 : 2개 일간지(세계일보, 한국경제신문)
- 접수의견 : 없음

○ 대중교통과
- 차고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적의 처리

○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, 자동차정류장

○ 편입 토지, 건물 현황
- 공유지(용산구) : 1필지 1,850㎡/ 건물 1동,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1,768.1㎡
- 토지이용계획(안) : 용산구에서 향후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및 생활체육·여가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구민체육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임

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	134

제출년월일 : 2002. 1. 29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 건 명 : 금천구 시흥동 270-9호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
2. 입안 내용

구분	위 치	면적 (㎡)	용도지역		비고
			변경 전	변경 후	
변경	금천구 시흥동270-9호	56	일반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

3. 입안 사유
○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차고지 기능이 상실된 자동차정류장의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함께 일반주거지역 종의 세분화를 병행 처리하고자 함

4. 기타
○ 주민의견 청취 현황
- 공람공고 기간 : 2002. 8. 14 ~ 8. 27
- 청취방법 : 2개 일간지(세계일보, 전국매일신문)
- 접수의견 : 없음

○ 도시계획상임기획단
- 용도 폐지되는 토지형태가 자투리 형태로 불균형적인 건축물을 배치가 예상되어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 등 녹화된 개방공간으로 활용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

○ 관련부서 : 의견 없음

○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, 공항고도(진입표면)지구, 여객자동차정류장, 도로

○ 편입 토지, 건물 현황
- 사유지 : 4필지 280㎡/ 건물 : 1동, 연면적 : 605.00㎡
- 건축계획용도(안) : 근린생활시설
- 건축계획(안) 규모 : 지하1층/ 지상 5층

도시계획(변경)결정에 대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	136

제출년월일 : 2002. 1. 29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 건 명 : 도시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결정 및 (개발제한구역)변경결정
2. 입안내용
가. 도시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

구 역 명	위 치	면적(㎡)	비 고
계		185,690	
중계본동	노원구 중계본동 29-4번지 일대	158,512	
상계4동	노원구 상계4동 산161-12번지 일대	27,178	

나. 도시계획(개발제한구역)변경결정

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계		166,195.000	감160,509	166,034.491	
중계본동	노원구 중계본동 29-47번지 일대	-	감133,331	-	
상계4동	노원구 상계4동 산 161-12번지 일대	-	감27,178	-	

3. 입안사유
○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대규모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해제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(해제)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코자 상정함.
4. 주민 의견청취
○ 기 간 : 2002. 12. 12 ~ 12. 26 (14일간)
○ 의견접수 현황 : 첨부
5. 관련부서의견
【 관련기관·부서 제출의견 】

부서·기관명	제 출 의 견	비 고
환 경 기 획 과	○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하여 수목의 훼손이 없도록 하고 ○ 해제되는 구역 경계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생태계 훼손시 복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자연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	
도시개발 공 사	○ 노원구 중계본동 29-47번지 일대는 국민임대주택사업(국책사업)으로 추진중인 지역으로 집단취락지로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상 용도지역 및 저밀도로는 계획된 세대수(1,700세대) 건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책사업으로 해제요청 ○ 개발제한구역 해제방법 변경 - 집단취락우선해제 → 국책사업 ○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 - 제1종 전용, 제1종일반주거지역 → 2·3종일반주거지역	

【 주민 제출의견 】

○ 중계본동 29-47번지(104번지 마을)

제 출 자	제 출 의 견	비 고
중계본동 104-12번지일대 윤진묵 외 14인	○ 1967년 철거민들의 정착지로서 약 946세대와 함께 정착한 지역이나 15채 주택만이 제외되어 이에 대하여 해제지역에 포함하여 주시고, ○ 토지에 대하여도 불하를 통해 이익배분과 보상을 바람	
마포구 노고산동 31-158번지 성주이씨 대종회 이종률	○공원으로 지정된 104번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 요구	

○ 상계4동 산 161-12번지 일대 희망촌

제 출 자	제 출 의 견	비 고
노원구 상계4동 산161-11호 박이순	○ 상계4동 산161-11호 필지의 일부만이 해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토지(공원)에 대하여도 해제 요구	

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	137

제출년월일 : 2002. 1. 29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건명 : 도시계획시설(와우근린공원) 변경결정

2. 입안내용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변경	공 원	근 린	마포구 창전동 3-183번지 일대	60,214	증) 13,368.4	73,582.4	와우시민아파트 철거부지 편입

3. 입안(변경) 사유

○ 1970년도에 붕괴된 와우시민아파트 철거부지를 인공 조림하여 그동안 녹지공간으로 활용하였으나 인근주민들에 의해 녹지가 훼손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접된 와우근린공원에 편입하고자 함

4. 기 타

○ 주민의견 청취현황

- 의견청취기간 : 2002. 7.22 ~ 2002. 8. 5
- 청취방법 : 2개 일간지(대한매일신문, 세계일보)
- 접수의견 : 없 음

○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: 원안동의(2002. 9.18)

○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: 원안가결(2002.10.29)
○ 도시계획상임기획단 : 별도의견 없음
○ 관련부서 검토의견
- 공원녹지과 : 별도의견 없음
○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,
○ 편입토지현황
- 18필지 13,368.4㎡(국·공유지 - 시유지 6,975㎡, 국유지 6,393.4㎡)
○ 재원조달 방안 : 국·공유지임
○ 도시계획수립지침등 관련법규 저촉여부 : 해당없음.
○ 환경성 검토 : 특이사항 없음
○ 추진경위
- '40. 3.12 : 도시계획시설(공원)결정(총독부고시 제208호)
- '70. : 와우시민아파트 붕괴 철거 후 녹지조성
- '02. 7.22 : 도시계획시설(공원)변경결정(안)공람공고(의견없음)
- '02. 9.18 : 구의회 의견청취(원안동의)
- '02.10.29 :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(원안가결)
- '02.11. 7 : 도시계획시설(공원)결정 및 변경결정 요청(구→시)

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	138

제출년월일 : 2002. 2. 3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 건 명 : 도시계획시설(철도) 변경결정 및 입체적 결정
2. 입안내용
가. 도시계획시설(철도) 변경결정(안)

구분	시설명	시설의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철도	도시철도 (지하철1호선동묘앞정거장)	종로구숭인동 83-2일대	7,275.4	증) 1,115.5	8,390.9	2001.12.1	토지일부 입체적결정

나.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(안)

구분	입체시설명	위 치	입체적 결정규모				비 고
			폭(m)	길이(m)	높이(m)	면적(㎡)	
신설	도시철도 (지하철1호선 동묘앞정거장)	종로구 숭인동 310번지 일부 (지하구간)	2.5~4.6	25.2	지하 0~25	81.8	높이는 현재 지반고 기준임

3. 입안사유
○ 본 동묘앞정거장은 6호선(동묘앞정거장)과 1호선(동대문운동장 정거장)의 환승거리를 단축

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업시행 중에 있으나, 사업시행 과정에서 환승이용객의 혼잡완화 및 지하철 부대시설의 추가 설치를 위한 정거장부지의 추가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하는 사항임

○ 본 정거장의 추가 편입되는 부지중 사유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촉진을 위하여 지하부분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코자 도시계획시설의결정·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와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음

4. 추진경위

○ 02. 8.12 : 도시계획시설(철도) 변경결정 요청(지하철건설본부)

○ 02.12.10 : 도시계획시설(철도) 변경결정(안) 공람공고

5. 공람공고시 제출의견 :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내용 및 처리결과

□ 도시계획상임기획단

○ 철도시설 변경에는 동의함

○ 보도상 환기구 설치로 인한 보행공간 축소에 따른 불편초래 및 시각장애인에 대한안전성 문제와 지상돌출시설물 외관상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

- 지하철건설본부 의견

·환기구 설치후 보도공간 2~3m확보,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점자블럭 설치, 환기구 외관의 화강암 돌붙임에서 투시형 환기구 변경 검토 대안제시

□ 종로구청

○ 연결통로 설치 예정토지 (58㎡) 철도로 추가 결정 방안 검토

- 지하철건설본부 의견

·연결통로 설치 예정토지는 궁안마을 재건축사업 준공전에 기부채납 예정 토지로서 이에 대한 처리방안이 미해결되어 철도 추가결정 곤란(추후검토)